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(도종환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832

발의연월일: 2020. 6. 22.

발 의 자: 도종환ㆍ이정문ㆍ김병욱

이재정・이장섭・기동민

안민석·김홍걸·박홍근

홍정민·박 정·오영훈

의원(12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2020년 1월 16일, '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 의원의 체육단체의 장의 겸직금지'가 시행됨에 따라 지방체육회의 지위 및 재정지원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.

이에 지방체육회를 대한체육회와 같이 법정법인화하여 자율적으로 지역체육을 특성화하는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고, 지방체육회를 분리 규정함에 따라 종래 임의기구였던 지역체육진흥협의회를 반드시 설치하여 지방자치단체장, 교육감(장), 지역체육회장의 원활한 협의를 유도하고자 함.

또한 지방체육회 예산지원 및 지방체육회장 선거를 해당 지방자치 단체 관할의 선거관리위원회에 위탁하는 각각의 근거를 명시해 독립 적 법인격으로서 안정적인 재원확보 근거를 마련하여 예산 집행과 사 업관리·감독 등 조직 관리의 투명성을 제고하고자 함(안 제2조, 제33 조의2 신설 등).

참고사항

이 법률안은 법령·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등에 따라 이미 비용이 발생하고 있는 경우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서 추가적인 재정수반 요인을 포함하고 있지 아니함. 법률 제 호

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

국민체육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제4호의2 중 "통합체육회"를 "대한체육회"로 하고, 같은 조 제9호가목 중 "통합체육회·대한장애인체육회"를 "대한체육회, 시·도체육회 및 시·군·구체육회(이하 "지방체육회"라 한다), 대한장애인체육회"로 하며, 같은 조 제11호 중 "통합체육회"를 "대한체육회"로 한다. 제5조제1항 중 "둘 수 있다"를 "둔다"로 하고, 같은 조 제2항 중 "협의회의"를 "협의회는 지방자치단체의 장, 지방체육회의 회장을 포함한 7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며, 그 밖에 협의회의"로 한다. 제18조제2항 중 "통합체육회"를 "대한체육회, 지방체육회"로 하고, 같은 조 제3항 중 "통합체육회"를 "대한체육회, 지방체육회"로, "보조할수 있다"를 "보조한다"로 하며, 같은 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이 경우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.

제22조제1항제10호 중 "통합체육회"를 "대한체육회, 지방체육회"로 한다.

제33조의 제목 "(통합체육회)"를 "(대한체육회)"로 하고,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"통합체육회"를 "대한체육회"로 한다.

제3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- 제33조의2(지방체육회) ① 지역사회의 체육 진흥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업과 활동을 하게 하기 위하여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인가를 받아 지방체육회를 설립한다.
 - 1. 지방체육회에 가맹된 체육단체와 생활체육종목단체 등의 사업과 활동에 대한 지도와 지원
 - 2. 해당 지역 체육대회의 개최와 국내외 교류
 - 3. 체육회가 개최하는 체육대회의 참가
 - 4. 선수 양성과 경기력 향상 등 지역 전문체육 진흥을 위한 사업
 - 5. 지역 체육인의 복지 향상
 - 6. 지역 생활체육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
 - 7. 지역 스포츠클럽 및 체육동호인조직의 활동 지원
 - 8. 생활체육 진흥에 관한 조사 및 연구
 - 9. 지역의 학교체육, 전문체육, 생활체육의 진흥 및 연계사업
 - 10. 지역 체육시설의 관리 및 운영
 - 11. 지역 체육역사 발굴, 확산 등 체육문화사업
 - 12. 그 밖에 지역 체육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
 - ② 지방체육회는 법인으로 한다.
 - ③ 지방체육회의 명칭은 해당지방체육회를 설립한 지방자치단체의 명칭에 "체육회"를 붙여 사용한다.
 - ④ 지방체육회의 회원과 회비 징수에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

다.

- ⑤ 지방체육회의 임원 중 회장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투표로 선출한다.
- ⑥ 지방체육회는 제5항에 따른 회장 선출에 대한 선거관리를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「선거관리위원회법」에 따른 시·도 및 시·군·구 선거관리위원회에 위탁하여야 한다.
- ⑦ 지방체육회에 관하여는 이 법에서 규정한 것 외에는 「민법」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.

제42조 중 "체육회"를 "체육회, 지방체육회"로, "통합체육회"를 "대한 체육회, 지방체육회"로 한다.

제5장에 제43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43조의3(감독) 지방체육회는 설립을 인가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감독하다.

제44조제1항 중 "체육회, 장애인체육회"를 "체육회, 지방체육회, 장애인체육회"로 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명칭 변경에 관한 경과조치) ① 이 법 시행 당시 통합체육회는 이 법에 따른 대한체육회로 본다.

- ② 이 법 시행 당시 통합체육회의 등기부, 그 밖의 공부상의 명의는 대한체육회의 명의로 본다.
- 제3조(종전의 행위에 관한 경과조치) 이 법 시행 당시 통합체육회가 행한 행위는 이 법에 따른 대한체육회가 행한 행위로 본다.
- 제4조(다른 법률의 개정) ① 개별소비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9조의2제1호 중 "통합체육회"를 "대한체육회"로 한다.

② 사격 및 사격장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3조제1호가목 중 "통합체육회"를 "대한체육회"로 한다.

③ 병역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77조의4제2항제2호 중 "통합체육회"를 "대한체육회"로 한다.

제5조(다른 법령과의 관계)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「국민체육진흥법」 중 통합체육회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법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으면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법 또는 이 법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.

신・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2조(정의) 이 법에서 사용하는	제2조(정의)
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	
1. ~ 4. (생 략)	1. ~ 4. (현행과 같음)
4의2. "국가대표선수"란 <u>통합체</u>	4의2 <u>대한체</u>
<u>육회</u> , 대한장애인체육회 또는	<u>육회</u>
경기단체가 국제경기대회(친	
선경기대회는 제외한다)에 우	
리나라의 대표로 파견하기 위	
하여 선발·확정한 사람을 말	
한다.	
5. ~ 8. (생 략)	5. ~ 8. (현행과 같음)
9. "체육단체"란 체육에 관한	9
활동이나 사업을 목적으로 설	
립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	
에 해당하는 법인이나 단체를	
말한다.	
가. 제5장에 따른 <u>통합체육회</u>	가대한체육회,
<u>·대한장애인체육회</u> 및 그	<u>시·도체육회 및 시·군·</u>
지부・지회(지부・지회의	<u>구체육회(이하 "지방체육</u>
지회를 포함한다), 한국도	회"라 한다), 대한장애인체
핑방지위원회, 서울올림픽	<u>육회</u>
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	

나. ~ 아. (생 략)

10. (생략)

11. "경기단체"란 특정 경기 종 목에 관한 활동과 사업을 목 적으로 설립되고 <u>통합체육회</u> 나 대한장애인체육회에 가맹 된 법인이나 단체 또는 문화 체육관광부장관이 지정하는 프로스포츠 단체를 말한다.

12. (생략)

제5조(지역체육진흥협의회) ① 지 기 방자치단체의 체육 진흥 계획을 수립하고 그 밖에 체육 진흥에 관한 중요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에 지역체육진흥협의회(이하 "협의회"라 한다)를 <u>둘 수 있다</u>.

② <u>협의회의</u> 조직과 운영에 필 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 체의 조례로 정한다.

나. ~ 아. (현행과 같음)
10. (현행과 같음)
11
대한체육회
12. (현행과 같음)
제5조(지역체육진흥협의회) ①
<u>둔다</u> .
② 협의회는 지방자치단체의
<u>장, 지방체육회의 회장을 포함</u>
<u>한 7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</u>
으로 구성하며, 그 밖에 협의회
<u>의</u>
<u>.</u>

제18조(지방자치단체와 학교 등 에 대한 보조) ① (생 략)

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<u>통</u>합체육회, 대한장애인체육회, 한국도핑방지위원회, 서울올림 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, 그 밖의 체육단체와 체육 과학 연구기관에 대하여 필요한 경비나연구비의 일부를 보조한다.

③ 지방자치단체는 <u>통합체육회</u> 및 대한장애인체육회의 지부· 지회에 예산의 범위에서 운영 비를 <u>보조할</u> 수 있다. <후단 신설>

제22조(기금의 사용 등) ① 국민 체육진흥계정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이나 지원 등을 위하여 사 용하고, 사행산업중독예방치유 계정은 「사행산업통합감독위 원회법」 제14조의4에서 정하 는 바에 따라 사용한다.

1. ~ 9. (생략)

10. <u>통합체육회</u>, 대한장애인체

제18소(지방자지단제와 학교 능
에 대한 보조) ① (현행과 같
<u>ㅇ</u>)
② <u>대</u>
한체육회, 지방체육회
③대한체육회,
<u> 지방체육회</u>
<u>보조한다</u> . <u>이 경</u>
우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
로 정한다.
제22조(기금의 사용 등) ①
 1. ~ 9. (현행과 같음)
 1. ~ 9. (현행과 같음) 10. <u>대한체육회, 지방체육회</u>

육회, 한국도핑방지위원회, 생활체육 관련 체육단체와 체육 과학 연구 기관 및 체육인재 육성 관련 단체의 운영·지원

11. • 12. (생략)

② ~ ④ (생 략)

제33조(통합체육회) ① 체육 진흥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업과 활동을 하게 하기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인가를 받아통합체육회(이하 "체육회"라 한다)를 설립한다.

1. ~ 6. (생 략) ② ~ ⑧ (생 략) <신 설>

11.•12. (현행과 같음)
② ~ ④ (현행과 같음)
제33조(대한체육회) ①
대한체육회

- 1. ~ 6. (현행과 같음)
- ② ~ ⑧ (현행과 같음)

제33조의2(지방체육회) ① 지역사 회의 체육 진흥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업과 활동을 하게 하기 위하여 관할 지방자치단 체의 장의 인가를 받아 지방체 육회를 설립한다.

- 1. 지방체육회에 가맹된 체육단

 체와 생활체육종목단체 등의

 사업과 활동에 대한 지도와

 지원
- 2. 해당 지역 체육대회의 개최

- 와 국내외 교류
- 3. 체육회가 개최하는 체육대회 의 참가
- 4. 선수 양성과 경기력 향상 등

 지역 전문체육 진흥을 위한

 사업
- 5. 지역 체육인의 복지 향상
- 6. 지역 생활체육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
- 7. 지역 스포츠클럽 및 체육동 호인조직의 활동 지원
- 8. 생활체육 진흥에 관한 조사 및 연구
- 9. 지역의 학교체육, 전문체육,생활체육의 진흥 및 연계사업10. 지역 체육시설의 관리 및
 - <u>운영</u>
- 11. 지역 체육역사 발굴, 확산 등 체육문화사업
- 12. 그 밖에 지역 체육 진흥을

 위하여 필요한 사업
- ② 지방체육회는 법인으로 한 다.
- ③ 지방체육회의 명칭은 해당 지방체육회를 설립한 지방자치 단체의 명칭에 "체육회"를 붙

여 사용한다. ④ 지방체육회의 회원과 회비 징수에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 로 정한다. ⑤ 지방체육회의 임원 중 회장 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투표로 선출한다. ⑥ 지방체육회는 제5항에 따른 회장 선출에 대한 선거관리를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「선거관리위원회법」에 따른 시·도 및 시·군·구 선거관 리위원회에 위탁하여야 한다. ⑦ 지방체육회에 관하여는 이 법에서 규정한 것 외에는 「민 법」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 을 준용한다. 체육회, 지방체육회---------대한체육회, 지 방체육회-----

<신 설>

제44조(보고·검사 등) ① 문화체 육관광부장관이나 지방자치단 체의 장은 이 법의 시행을 위 하여 필요하면 이 법의 적용을 받는 <u>체육회, 장애인체육회</u>, 진 흥공단, 수탁사업자, 그 밖에 체육단체나 직장에 대하여 그 업무에 관한 보고를 명하거나 소속 공무원에게 그 사업소· 사업장 등에 출입하여 장부· 서류, 그 밖의 물건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.

② (생 략)

제43조의3(감독) 지방체육회는 설
립을 인가한 지방자치단체의
장이 감독한다.
제44조(보고・검사 등) ①
<u>체육회, 지방체육회, 장애</u>
<u>인체육회</u>
② (현행과 같음)